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정하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대비 1만분의 1,227에서 건강보험료율 대비 100만분의 9,082로 조정하는 한편,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14. ~ 11. 23.) 결과,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1,227”를 “100만분의 9,08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2. 혈관성 치매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F03
	5. 알츠하이머병	G30
	6. 거미막하출혈	I60
	7. 뇌내출혈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9. 뇌경색증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16. 파킨슨병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0. 중풍후유증	U23.4
	21. 진전(震顫)	R25.1
	22. 척수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24. 다발경화증	G35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 및 유사질병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 ----- 100만분의 9,082-----.